

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8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6. 9. 4.
발 의 자 : 정승현 의원
외 5인

□ 제 안 이 유

-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·제39조·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연간 회의총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함.(안 제2조)
-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,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규정하고,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3조)
-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1일,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 2일로 함.(안 제4조)
-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심의안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지방자치법

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·제39조·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·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간 회의총일수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38조·제39조·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1.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, 회의일수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.
2.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(정례회 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(경과조치)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.